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109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2. 4. 5. 접수 제27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4070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7. ‘C는 원고에게 4,358,343원 및 그 중 1,196,43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4. 25.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는 2021. 11.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E, C, F이 있었다.
- 2)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1.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2. 4. 5. 접수 제27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가 G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C와 원고 사이에 G위원회가 결정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G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C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감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만약 C가 변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C의 채무에 관한 채무조정승인의

효력은 상실되는 점, G위원회의 승인결정에 의하여 채무가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와 같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결정은 취소되고 채무자는 조정 전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신용회복지원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별지

1)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을 상속등기 접수일인 “2022. 4. 5.”로 특정하였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 일자인 “2021. 11. 2.”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